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6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정재 · 서천호 · 임종득
박덕흠 · 안철수 · 김대식
이달희 · 최은석 · 박충권
최수진 · 강명구 · 서명옥
의원(12인)

제안이유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송부 · 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및 중단, 투표함 관리 이상, 개표 중단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 공개 · 재발방지 절차 등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 · 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 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 다.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고 발생 사실·조치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 라.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함(안 제151조의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의2부터 제15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사전투표율, 과거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표구별 투표용지 작성 수량
2. 예비 투표용지 확보 수량
3.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 시 긴급 공급 절차
4. 투표용지 인계·인수 책임자
5. 투표용지 보관 및 운송 절차
6. 제15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의 보고체계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은 선거의 종류, 투표구별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의3(투표용지 부족 우려 시 보고 및 조치)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의 수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거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 사항, 공급한 예비 투표용지의 수량, 예비 투표용지의 인계·인수 시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투표용지의 부족 우려 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의4(선거관리 중대사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이하 “선거관리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로 인한 투표 지연·중단

2. 투표용지 또는 투표함의 분실, 오배송 등 관리 이상
 3.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중단
 4. 개표 지연 또는 중단
 5. 선거 관련 전산시스템의 장애
 6. 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선거 관계 서류의 분실·훼손
 7.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무원·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법령 위반
 8.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투표 대기 선거인에 대한 안내 및 투표소의 질서유지
 2. 투표 지연·중단 시간 및 사유의 투표록 기재
 3.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투표 지연·중단 사실 보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투표시간 연장 요청
 5. 그 밖에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사실, 사고 개요, 조치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2. 선거관리 중대사고 대응 경과
3.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미친 영향
4.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준수 여부
5.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관련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등 책임조치 현황

6. 재발방지 대책 및 법령·제도 개선 필요 사항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 시 선거인의 개인정보, 투표의 비밀, 선거보안 또는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6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의5(선거관리 중대사고 은폐 등에 대한 조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행위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6조 본문 중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舉錄”을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및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 수급계획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용지 수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중대사고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선거관리 중대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1조의2(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사전투표율, 과거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투표구별 투표용지 작성 수량</u> <u>2. 예비 투표용지 확보 수량</u> <u>3.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 시 긴급 공급 절차</u> <u>4. 투표용지 인계·인수 책임자</u> <u>5. 투표용지 보관 및 운송 절차</u> <u>6. 제15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의 보고체계</u> <u>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 <p><u>③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은 선거의</u></p>

<신 설>

종류, 투표구별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의3(투표용지 부족 우려 시 보고 및 조치)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의 수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거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 사항, 공급한 예비 투표용지의 수량, 예비 투표용지의 인계·인수 시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은 제1항 및 제2

<신 설>

항의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투표용지의 부족 우려 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의4(선거관리 중대사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이하 “선거관리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우려로 인한 투표 지연·중단
2. 투표용지 또는 투표함의 분실, 오배송 등 관리 이상
3.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중단
4. 개표 지연 또는 중단
5. 선거 관련 전산시스템의 장

에

6. 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선거 관계 서류의 분실·훼손

7.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무원·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법령 위반

8.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 중 대사고가 발생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투표 대기 선거인에 대한 안내 및 투표소의 질서유지

2. 투표 지연·중단 시간 및 사유의 투표록 기재

3.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투표 지연·중단 사실 보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투표시간 연장 요청

5. 그 밖에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사실, 사고 개요, 조치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2. 선거관리 중대사고 대응 경과
3.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미친 영향
4.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준수 여부
5.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관련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등 책임조치 현황

<신 설>

6. 재발방지 대책 및 법령·제도 개선 필요 사항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 시 선거인의 개인정보, 투표의 비밀, 선거보안 또는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6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의5(선거관리 중대사고 은폐 등에 대한 조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행위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

